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 거더를 사용하여 거더의 형고를 줄이고, 자중을 경감시키며 철근집합체를 배치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극한 상태 거동을 연성화하며, 초고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긴장으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는 교량 거더에 관한 기술이다.

<범위>

경제적인 최적충진밀도 배합에 의한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성거동 유도 특성을 가진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적 특성을 가진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 거더 교량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아특수건설(심석래), ② (주)건화(황광웅, 정조화, 최진상, 노정래), ③ (주)이산(이원찬), ④ (주)대한콘설탄트(이진산) ⑤ (주)드림이엔지(홍윤표, 박용성)

- 나. 전화번호 : ① 02-2107-7100, ② 02-6938-7884, ③ 031-389-0069, ④ 02-725-4426, ⑤ 042-828-0813

2. 명칭 : 토사지반에서 정착 가능한 고강도 강연선 멀티압착방식의 소구경-경량 압축형 영구앵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하부압착구 개별 천공홀에 강연선을 삽입·압착하여 앵커체에 결속시키는 멀티압착기술과 2,160MPa 또는 2,360MPa의 고강도 강연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압축형 영구앵커로서, 기존 앵커 대비 직경 19.7% 감소 및 25% 경량화(설계하중 400kN 기준), 추가공정 불필요를 통해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강연선 극한 하중의 95% 상태에서 5분간 유지가 가능하여, ETAG013 기준을 상회하는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한계상태 설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하부압착구 개별 천공홀에 강연선을 삽입·압착하여 결속시키는 멀티압착기술을 사용하여 2,160MPa 또는 2,360MPa의 고강도 강연선으로 제작된 압축형 영구앵커 생산 기술로써 소구경·경량화·추가공정 절감이 가능하여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의 절감이 가능한 영구앵커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2호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성능등급의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대상 철도시설의 위치·명칭,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